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이용) 사용료의 현실화 및 감면 제도의 추가신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 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이용)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내용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3조의2)
-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이용) 사용료의 기준정비와 재조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함.(안 별표2, 별표3)
- 라.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안 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입장권”이라 함은 체육시설내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를 말한다.
제2조제15호 중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해당 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시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5. 시 및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유치한 전지훈련.(단, 관외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13조제4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2.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제22조의 제목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전문체육인 1명 및 생활체육전문인 1명
3.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 1명
5.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등 5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시설업무 담당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의결사항이 경미한 경우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의 · 의결의 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기단체 또는 연고프로구단,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을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입장권”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2, 별표3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단체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장권”이라 함은 체육시설내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를 말한다.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15.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운동 경기를 말한다.	15.----- ----- <u>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u> ----- ----- ----- -----.
16. ~ 21. (생략)	16. ~ 21. (현행과 같음)
<신설>	22.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생략)

<신 설>

<신 설>

③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훈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 해당 체육회-----

3. (현행과 같음)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시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5. 시 및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유치한 전지훈련.(단, 관외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 단체와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나. (생략)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2.·3. (생략)

⑤ ~ ⑦ (생략)

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 8. (생략)

<신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④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2.·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②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2조의2(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신 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전문체육인 1명 및 생활체육전문인 1명

3.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 1명

5.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등 5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시설업무 담당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신 설>

제2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의결사항이 경미한 경우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의·의결의 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위탁관리) ① -----

위하여 <u>경기단체 또는 연고프로구단,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 <u>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도원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150,000	225,000	450,000	675,0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스 피 드 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 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 외)		
	피겨스케 이트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가좌 테니스장	주간 2시간	실내 (코트당)	20,000	30,000	40,000	50,000			
		실외 (코트당)	10,000	15,000	20,000	25,000			
인천월드컵 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축구(풋살장), 실내 야구 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 임 당 1일 3시간 사용 기준한다.(프로경기 는 제외)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문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200,000	300,000	500,000	75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보조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ING 종합스포츠타운	축 구 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 부대 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 을 부과 징수 한다.		
		보조 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구 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보조 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 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ING 야구장	야구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다목적운동장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정구코트 (면 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24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 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 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 로 운영할 수 있다.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계양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운동장	주간 2시간	20,000	25,000	35,000	45,0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양궁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강화고인돌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100,000 ~ 200,000 (65,000 ~ 130,000)	150,000 ~ 300,000 (100,000 ~ 200,000)	250,000 ~ 500,000 (150,000 ~ 300,000)	375,000 ~ 750,000 (200,000 ~ 400,0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BMX경기장	주간	100,000 ~ 200,000	150,000 ~ 300,000	250,000 ~ 500,000	375,000 ~ 750,000	
선학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풀	주간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연습풀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다이빙풀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서브코트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실내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5,000	35,000	50,000	65,000	
	실외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열우물스쿼시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단복식 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 경 기 장	육상장	주간	130,000	195,000	300,000	450,000	* 연희크리켓경기장은 문학야구장 사용료 적용
		잔디 구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 조 경 기 장	육상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 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잔디 구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테니스장 (실외)		주간 2시 간	10,000 (코트당)	15,000 (코트당)	20,000 (코트당)	25,000 (코트당)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선학국제빙상 경기장	빙상장	1일 1시간	90,000 ~ 100,000	117,000 ~ 130,000	500,000 (5,000,000)	650,000 (6,500,000)		
	컬링장 (면당)	1일 1시간	40,000 ~ 50,000	52,000 ~ 65,000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옥련국제사격장	10M 25M 50M	주간	30,000	40,000	40,000	50,000		
	10M 러닝타겟	주간	30,000	45,000	40,000	60,000		
	결선경기장	주간	60,000	90,000	70,000	105,000		
	족구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기 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도원수영장		1회 3시간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일반 3,6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 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 로 이용료 적용
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8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2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수봉양궁장		1회 2시간		2,100	1,400	
수봉궁도장 계산궁도장		1회 2시간		1,400	1,000	
인천국제벨로드롬		1회 1일		일반 7,000 학생 5,000		
다목적운동장	정구코트	1 회 1시간	주간	1,000	3,000	
			야간	1,500	4,5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일반 2,600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 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계양체육관		군인· 청소년	군인· 청소년	
	남동체육관		2,200	1,800	
	강화고인돌체육관		어린이	어린이	
	선학체육관		1,100	900	
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	1회 3시간	일반 6,000 군인·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일반 4,8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400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컬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송림체육관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400	
열우물테니스경기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6,000 군인·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일반 4,8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4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열우물스쿼시경기장		1회 2시간	일반 8,000 군인· 청소년 6,000 어린이 4,000	일반 6,400 군인· 청소년 4,800 어린이 3,2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1회	일반 7,000 학생 5,000	일반 5,600 군인· 청소년 4,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500 어린이 3,000	일반 3,200 군인· 청소년 2,800 어린이 2,400	
잔디 구장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3,300	일반 2,6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군인· 청소년	군인· 청소년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2,200 어린이	1,800 어린이	
	선학하키경기장		1,100	9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1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옥련국 제사격 장	10M	소총, 권총	3,000	8,000	2,400	6,400	
	25M	권총 / 스탠다드 / 센터파이어	6,000	17,000	4,800	13,600	
		속사 (0.5조 5사대)	11,000	33,000	8,800	24,000	
	50M	소총, 권총	6,500	21,000	5,200	16,800	
	10M 러닝타겟	소총	3,500	8,000	2,800	6,400	
	스크린사격장	1종목당	일반 2,000 청소년·어린이 1,500		일반 1,500 청소년·어린이 1,000		

[별첨 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44조(공공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

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신 중 환